

「영광군 건축 조례」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「영광군 건축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15일

영 광 군



1. 조례제명: 영광군 건축 조례

2. 개정이유

-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반영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건축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(안 제38조제1항)
 -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정비

4. 개정 조례안: 붙임

5. 입법예고기간: 2024. 4. 15. ~ 2024. 5. 7.(20일 이상)

6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(참조: 종합민원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- 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

우) 57036/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종합민원실
전화) 061-350-5472, FAX) 061-350-5596

다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(☎061-350-547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영광군 조례 제 호

영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광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1항 1호 및 2호 중 “9미터”을 각각 “10미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8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</p> <p>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.</p> <p>1.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.5미터이상</p> <p>2.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: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</p> <p>② ~ ⑤(생략)</p>	<p>제38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.5미터이상</p> <p>2.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: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의견제출서

1. 조 례 안

「영광군 건축 조례」

2. 의 견

관련조문

의견사항

3. 기 타
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4년 월 일

의견제출인 주소

(전화 :)

성 명

(서명 또는 인)

영 광 군 수 귀하